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법무 02124- 6556	전결유형 전기사상	조항 전기사상
처리기간	시정		
시행일자	1987. 12. 30 <i>Dec 31</i>		
보존년한	준영구		
보 조 기 판	부시정 <i>MS</i>	법 제 장 <i>MS</i>	법 제 장 <i>MS</i>
기획관리실장	<i>MS</i>		
법무담당관	법제제장 <i>MS</i>		
기사체인자	이재호	1987. 12. 30 <i>Dec 31</i>	30
경우 수신 참조	각안참조		
발 신	발신	발신	발신
제목	서울특별시신설구업무처리에관한점정규정제정 발령 <i>Dec 31</i>		
(제1안) 내부결재			
1. 인사 02124-431(87.12.30)호와 관련입니다.			
2. 서울특별시신설구업무처리에관한점정규정을 별첨(안)과 같이 제정 하고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고자 합니다. <i>Dec 31</i>			
첨부 발령안 1부.			
<i>MS 650</i>			
정서			
관인			
발송			
(제2안)			
수신: 공보관			
제목: 시보 게재			

정직 2월사 창조
Dec 31

별첨 서울특별시신설구입무처리에관한점정규정제정

규정 윤

시보에 게재 발령할 것.

첨 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. 끝.

(제 3 앙)

수 신 : 인사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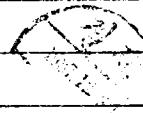
제 목 : 훈령 발령

서울특별시 신설구입무처리에관한점정규정제정

규정 윤

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였으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.

첨 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. 끝.



서울특별시 신설구업무처리에관한 잠정규정제정 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

19 87년 12 월 31 일

서울특별시장 김동래

2619

서울特別市 訓令 第160号

서울특별시 新設區 業務處理에 관한 暫定規程

新設区 業務處理에 관한 暫定規程을 다음과 같이 制定한다.

第1條 (目的) 이 規程은 大統領令 第1247號에 의하여 1988年
1月1日부터 開設되는 新設区 業務處理의 원활을 기함을 目的
으로 한다.

第2條 (業務處理) ① 新設区(新設 保健所를 包含한다. 이하 같다)

의 業務處理는 新設区 機構의 해당 職位에 대한 새로운
補職發令이 있을때까지 新設区 管轄区域이 속하였던 從前区
(以下 從前区라 한다) 機構의 같은 職位 补職公務員이
각각 兼任하여 处理한다.

② 新設区의 行政事務中에 從前区에 없던 事務의 ~~處理~~은
따로 정한다.

附 則

이 規程은 198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.